케이블카 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케이블카 자판기 사용 · 수익허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료)

- ① 1차년도 연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단, 월할 계산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② 2차년도 연간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공사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에 지정기한 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영관광개발공사 재산 관리규정에 준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반조건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통영관광 개발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하부역사 매점 건물재산가액 이상의 손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 하여 하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 그 책임을 진다.
- 2. 사용인은 내부시설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 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공사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하는 것(양도, 양수 등)
-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 2. 허가재산의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 3.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최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령)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를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형 변경에 대한 우리공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등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공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추가 시설물 설치 및 사용물건의 구조변경과 내부수리는 본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자판기운영 특수조건)

- 1. 사용인은 자판기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이용객들의 불 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보건위생 및 케이블카 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 자판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 2. 판매물품의 종류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제18조(자판기 설치 운영 등) 사용인은 자판기설치운영을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대에는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결정에 의한다.

케이블카 자판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통영케이블카 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휴게실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 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취득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자판기와 그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화기 및 전기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우리공사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3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 ① 사용자는 자판기를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공사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은 시중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 ②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조(공공요금)

- ①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은 허가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기타 관리비는 사용량의 측정과 요금의

적정부과를 위하여 설치된 별도의 계량기에 의하거나 시설별 사용량 적정 분배한 계산에 따른다.

제5조(청소관리)

- ① 사용자는 자판기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도난방지 및 부대시설 설치)

- ① 자판기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② 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간판 및 차양막 등은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기간) 특별한 사유(지시불이행 또는 허가조건위반)가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산정)

-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익년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연도분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제9조(금지사항)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철거예치금)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의한 철거예치금을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및 어구해석)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어구의 해석은 우리공사의 결정에 따른다.